//hyu.wiki/%EA%B7%9C%EC%A0%95%EA%B0%9C%EC%A0%9520200429

규정개정20200429

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.

□

목차

- 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
- 2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(Ⅰ)일부개정
- 3 제2전공(다중전공, 연계전공,융합전공) 시행세칙 일부개정
- 4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
- 5 직제규정 일부개정
- 6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
- 7 ERICA융합원 규정 제정
- 8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

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

- 제3조 (별표1) 입학정원 조정
  -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: 융합전자공학부,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, 데이터사이언스학과, 심리뇌과학과, 로봇공학과, 인공지능학과)
  -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
  -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
  - 첨단학과 신·증설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

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2021□□□ □□□□□□ 2804□ 2890□□□, ERICA□□□□ 1852□□ 1905□ □□□

- 제18조(재입학)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
  -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
  - 제1항 '재입학은 해당학과(부) 정원의 여석 범위'를 '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'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
- 제47조 (별표2) 학사학위 수여구분
  -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: 학위 - 공학사
  - 융합전공(산업인공지능전공) 신설에 따른 추가 : 학위 - 공학사, 2020학년도부터 적용

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(Ⅰ)일부개정

- 제6조(재수강 및 학점포기)
  - (ERICA)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
  - 기존 :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+이하(F포함)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. 다만,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

용된다.
    - 변경 : (앞부분 동일 생략) 다만,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이 2회까지만 허용되나, 필수 교과목은 이수할 때까지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제2전공(다중전공, 연계전공,융합전공) 시행세칙 일부개정

- 제7조(학위수여)
    -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“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”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
    - 기존 :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제2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이 연장되지 않는다.

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

- 공결사유에 “원장이 승인하는 사유” 추가
-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
-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(컴퓨터소프트웨어학- 공학사)

직제규정 일부개정

- 제6조 부총장 직제규정에서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

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

-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
-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
-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

ERICA융합원 규정 제정

-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

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

- 장학복지회 소속(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)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
- 이사회 구성 변경
- 이사회 기능 변경
- 회계기준 변경 등